C - 55 - 2015

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 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부재 운반 및 적재 시 안전조치 사항

- (1)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기 전에 운반차량의 차종과 주행시간, 진입경로, 운반물량, 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, 상·하차 시 안전작업, 부재 적재장소 확보 등이 포함된 부재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2) 부재의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다 반입과 소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(3) 부재는 각 유니트 부재마다 번호를 기재하여 현장 설치순서에 적합하도록 배치 및 적재하여야 한다.
- (4) 반입된 부재는 전도 및 도괴가 되지 않도록 바닥상태, 적재높이, 적재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 하역작업 시에는 부재의 형상, 종류, 중량, 양중장비 능력,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역장비 사용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6) 관리감독자는 부재의 차량 적재 높이, 적재폭 등이 교통법규에 위반 사항이 없는 지 점검하고 고정용 로프를 풀었을 때 부재가 무너질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(7)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 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.
- (8) 부재 하역장소는 근로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타 작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